

#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判決의 檢討

金 春 煥\*

## 〈차례〉

### I. 序論

### II. 事件概要와 判決內容

1. 事件概要
2. 联邦地方法院의 判決
3. 第8巡回抗訴法院의 判決
4. 联邦大法院의 判決

### III. 联邦大法院判決의 檢討

1. 事實上의 侵害, 因果關係 및 救濟可能性
2. Take Care 條項

### IV. 結論

## I. 序論

미국의 시민소송에 있어서原告適格의 法理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잠재적 소송당사자들에게 일관성이 없는 기준, 즉 유연성을 가진 이론으로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sup>1)</sup> 공법의 전 영역에서 가장 무정

\* 朝鮮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1) Daniel P. Condon, Note, The Generalized Grievance Restriction: Prudential Restraint or Constitutional Mandate, 70 GEO. L.J. 1157, 1157-59 (1982).

형적인 개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2)</sup> 환경법영역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관한 소송은 이 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에서 1969년대와 1970년대는 환경소송에 있어서 비교적 유연한 원고적격의 조건이 적용되었던 시기였던 반면, 최근 연방대법원은 환경소송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원고적격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판결<sup>3)</sup>에서 연방대법원은 사법제도에 접근을 시도하는 환경단체들에게 더 많은 장애물을 제공하였다.

Defenders 사건에서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야생생물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상 시민소송의 규정하에서 내무장관(the Secretary of the Interior)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동법 제1536(a)항하에서 장관이 제정한 규칙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동 규칙은 연방행정기관에게 내무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연방행정기관이 권한을 부여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스스로 시행하는 행위가 멸종위기 종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들은 동 규칙이 협의조건을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에까지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동 규칙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sup>4)</sup>

미네소타연방지방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그 소송을 각하하였다. 항소심에서 제8연방순회항소심법원은 원고들이 각하된 청구를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적격의 조건을 입증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에서 지방법원은 원고적격의 결여를 이유로 장관의 약식재판의 청구를 부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8순회항소법원이 이미 원고적격 문제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제8순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

2) *Flast v. Cohen*, 392 U.S. 83, 99 (1968).

3) 112 S. Ct. 2130 (1992).

4) 50 C.F.R. 402.01(a) (1992) (협의조건을 미국 국내와 영해로 제한하고 있다).

을 지지하였다.<sup>5)</sup>

연방대법원은 제8순회법원의 원고적격문제에 근거한 판결을 각하하고 그 사건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파기이유는 원고적격심사를 전통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은 절박하고 실질적인 사실상의 침해(injury in fact)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둘째,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손해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의 침해조건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원고들이 승소하게 된다고 하여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침해를 구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sup>6)</sup>

Defenders 판결은 미연방대법원이 최근 환경소송에서 제한적 원고적격심사를 적용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추세를 반영한 가장 최근 판결이며 새로운 사실관계에 있어서 환경상 원고적격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Defenders 판결 이전에 원고적격에 관한 중요한 세 판결이 있었는데<sup>7)</sup>, 이들 판결에서는 환경단체들은 오로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10(a)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sup>8)</sup> 그 사건들은 모두 어느 단체회원의 레크레이션의 이용과 미적 자연자원의 향유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Defenders에서의 소송은 멸종위기야생생물보호법상의 시민소송 규정에서 제기되었고, 해외에서 멸종위험종을 연구하는 개별 회원들의 이익

5) Defenders of Wildlife v. Lujan, 911 F.2d 117, 122 (8th Cir. 1990).

6) 112 S. Ct. at 2140.

7)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412 U.S. 669 (1973);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n, 497 U.S. 871 (1990).

8) 5 U.S.C. 702 (1988).

에 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Defenders 판결 내용의 검토는 미국의 시민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Defenders 사건의 개요와 미네소타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제8순회항소법원의 판결,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 시민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에 있어서 Defenders 判決의 의미를 평가한다.

## II. 事件概要와 判決內容

연방대법원은 언제나 시민소송에 관하여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침해(injury in fact)」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환경보호단체는 減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에 근거하여 내무장관(the Secretary of the Interior)이 제정한 규칙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은 원고적격의 존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판단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사실의 개요와 하급심판결의 내용,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事件概要

減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제1536조(a)항은 연방행정기관이 권한을 부여하고 자금을 교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실시하는 어떤 행위도 모든 減種危

機種 및 減種憂慮種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내무장관 또는 상무장관(the Secretary of Commerce)과 협의(consultation)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sup>9)</sup> 1986년에 어종·야생생물부(Fish and Wildlife Service) 및 전국해양수산부(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가 그 당시까지 동조항을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합동규칙(joint regulation)을 미국 국내 및 영해(high sea)에서의 행위로 제한하는 개정을 하였다.<sup>10)</sup> 그리하여 환경보호단체인 Defenders of Wildlife가 내무장관을 상대로 이 규칙은 減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제1536조(a)항(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다는 宣言的 判決(declaratory judgement)과 동 규정을 종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공포하도록 하는 禁止命令訴訟을 제기 위하여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9) 동법에서는 「각 연방행정기관은 동조(h)에 근거한 위원회가 이들 행정기관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관과 협의 또는 그의 원조를 받아서 중요한 서식지를 收用하는 경우에는 영향하에 있는 주와 협의를 거친 후 스스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자금을 교부하거나 또는 스스로 실시하는 어떤 행위도 減種危機種 또는 減種憂慮種의 계속적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없으며, 또는 내무장관이 결정하는 이들 종의 서식지를 환경의 파괴 또는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동항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각종 행정기관은 이 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및 상업적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6 U.S.C. § 1536(a)(2)).
- 10) 이는 「멸종위기야생생물보호법에의한행정기관상호간협의에관한규칙」(50 CFR 402.1 et seq.)이다. 본규칙 402·401조(a)항은 「동법 7조(a)항(2) (減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1536조(a)항(2))에서는 각 연방 행정기관은 장관과 협의 또는 그의 원조를 받아 합중국 국내 및 영해에 있어서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자금을 교부하거나 또는 스스로 실시하는 어떤 행위도 減種危機種 또는 減種憂慮種의 계속적인 생물을 위협할 우려가 없고, 또는 중요한 서식지를 파괴 또는 그의 환경을 악화시켜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전의 규칙에서는 「減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제7조(1536조)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하여 미국의 국내, 영해 및 외국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種의 계속적인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2 Fed. Reg. at 4871(1978)).

## 2. 聯邦地方法院의 判決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관한 조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의 각하를 청구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가 정부의 행위에 관하여 법에 따르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적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각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새로운 규칙하에서는 연방행정기관은 외국에서의 행위에 관해서는 내무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원고인 Defenders of Wildlife(이하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원고라고 한다)는 그 결과 연방행정기관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滅種危機種이 악영향을 받게 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 중의 일원이 주로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서식하는 滅種危機種 및 滅種憂慮種을 관찰함으로써 개인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의 편익을 받게된다는 취지의 주장, 즉 멸종위기야생생물보호법의 실시 및 적용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내무장관의 행위를 다툼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상의 침해를 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가 자기가 청구한 구제방법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지만 원고는 외국에서 어떤 개발계획으로 滅種危機種 또는 滅種憂慮種이 현실적으로 받게 될 영향에 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추상적으로 동법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을 구하는데 불과하고, 특히 원고가 침해원인이라고 하여 다툼이 있는 연방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禁止請求를 해태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침해를 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sup>11)</sup>

11) Defenders of Wildlife v. Hodel, 658 F. Supp. 43 (D. Minn. 1987).

### 3. 第8巡回抗訴法院의 判決

원고는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제8순회항소법원은 원판결을 폐기하고 미네소타연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동 법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요건으로서 원고가 받은 침해가 사실상의 침해를 구성함과 동시에 법원의 自制的 또는 政策的인 제약사항으로서 원고의 최초 진술(complaint)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법 익의 범위내(within the zone of interest)」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하여 원고적격의 요건에 관한 일반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즉 첫째로 원고의 일원이 당해 지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미적 자연자원의 감상을 위해, 環境保全을 위해 또는 레크레이션을 위해 제가치에 관한 이익도 원고적격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둘째로 연방의회는 自制的 또는 政策的 制約事項을 법률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고는 滅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소정의 시민소송을 자기 명의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셋째로 원고는 진술에서 滅種危機種의 滅種率의 증가로 인한 침해와 동시에 節次的 侵害(procedural injury)을 받게 된다는 점등을 주장하였는데, 원고 중의 일원이 滅種危機種의 생존에 있어서 가지는 職業上 또는 미적 자연자원의 향유에 관한 이익의 침해는 내무장관이 새로운 규칙을 공포한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내무장관을 상대로 연방행정기관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관해 協議를 명하는 규칙을 공포하도록 하는 禁止命令訴訟을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는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sup>12)</sup>

이것을 받아들여 환송 제1심에서 미네소타연방지방법원은 원고에게

---

12) Defenders of Wildlife v. Hodel, 851 F. 2d 1035 (8th Cir. 1988).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滅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제1532조(6)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미국 국내에서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한 규정이고, 동법 제1533조는 개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에서의 연방행정기관의 행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동조의 리스트에는 미국에 고유하지 않는 종 또는 미국에서는 생존하지 않는 다수의 종이 등재되어 있고, 동법 제1536조의 문언과 그곳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가 포괄적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은 외국에서의 연방행정기관의 행위에 관해서도 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本案을 인용하였다.<sup>13)</sup>

이에 대하여 피고인 내무장관은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제8순회공소법원은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였다. 동법원은 먼저 원고의 일원이 특정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滅種危機種을 관할하거나 그 서식지에 渡航하거나 또는 再渡航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건 규칙을 다툼으로써 사실상의 침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내무장관이 필요한 協議節次를 태만이 한 것에 근거하여 절차적 침해를 논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원고는 연방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확대된 토지의 불특정부분의 이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정 사실을 제시하고 당해 절차에서 유래하는 편익은 동법의 목적임을 입증하고 동시에 침해의 根源으로 어떤 행정기관을 특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滅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은 일정한 원고에 대하여相關的·節次的 權利(correlative procedural rights)를 창설하는 법률상의무, 즉 연방헌법 제3조에 있어서 사실상 침해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

13) Defenders of Wildlife v. Hodel, 707 F. Supp. 1082 (D. Minn. 1989).

분한 침해를 창설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동법 제1540조(g)항 소정의 시민소송의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연방의회의 의사가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지지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4)</sup>

#### 4. 聯邦大法院의 判決

내부장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법정의견<sup>15)</sup>에서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제8순회항소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법리에는 법원의 자제적인 제약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핵심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연방헌법 제3조의 「사건 또는 쟁송(cases and controversies)」의 요건으로 이것은 기본적이며 不可變的이고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헌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원고가 사실상 침해를 받았고, 소송의 대상인 행위와 원고가 받은 손해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으며, 그리고 원고가 받은 침해가 판결에 의하여 현실로 회복될 가능성(redressability)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원고가 略式裁判(summary judgement)을 제기하면 이상의 3요소를 본안단계에서 필요한 방법과 필요한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원고적격에 관한 일반적 요건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원고는 연방행정기관이 자금을 교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減種危機種과 減種憂慮種이 멸종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였지만 「사실상의 침해심

14) Defenders of Wildlife v. Lujan, 911 F. 2d 117 (8th Cir. 1990).

15) 504 U.S. 557-578.

사」의 충족을 위해서는 더 나아가 자기가 침해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 는 점, 즉 당해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가 특별한 이익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위로 자기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해태하고 있다.

둘째, 원고제출의 宣誓陳述書(affidavit)에서는 연방행정기관이 자금을 교부한 일정한 사실이 滅種危機種 및 滅種憂慮種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의 위법행위를 적시하는 것만으로 원고의 일원이 이들 종에 관한 연구, 관찰을 위하여 현지에 다시 渡航하게 되는 시기 와 그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하든 특정하지 않고 또한 이들 종에 대한 침해로 원고들 종의 일원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침해에 관한 사실인정을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셋째, 원고는 연방행정기관의 자금교부행위로 악영향을 받아 연속된 생태계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완전히 당해 행위를 다투는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뜻의 「生態系連鎖」(ecosystem nexus) 이론을 주장하였지만, 환경상의 손해로부터 권리침해(wrong)를 주장하는 자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의 이용자이어야 하며, 또한 원고는 지구상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滅種危機種을 연구·관찰하는 자는 모두 당해 행위를 다투는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動物連鎖(animal nexus)」 이론, 더 나아가 이 종에 관해서 전문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모든 당해 행위를 다투는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職業連鎖(vocational nexus)」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는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침해(perceptible harm)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금을 교부하는 연방행정기관은 소송당사자는 아니며, 자금의 일부를 교부하는데 불과하다.

다섯째, 원고는 *滅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제1540조(g)항이 동법 제1536조(a)항(2)에서 규정한 협의에 관하여 절차적 권리(legal right)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사실상의 침해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적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이 절차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절차가 어떠한 구체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정부의 절차상의 의무위반만으로는 구체적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여섯째, 공익(public interest)을 옹호하고 정부에게 연방헌법 및 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연방의회 및 대통령의 역할이고, 법률의 타당한 집행에 관한 공익은 법률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권리전환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충실히 집행된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연방의회가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

이에 대해서는 Blackmun 판사와 O'Connor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反對意見을 내놓았다.<sup>16)</sup>

첫째, 합리적인 사실인정 자라면 원고들 중의 일원이 다시 渡航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본건 사업지에 渡航하였으며, 그들의 전문적 사정에 기하여 다시 渡航할 개연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略式裁判(summary judgement)에 관하여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의 宣誓陳述書 및 그들 중언은 본건 사업으로 급박한 침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정식 사실심리를 위하여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을 도출하기 위한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장래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한 기술을 요구하여도 진정한 침해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연방

---

16) Ibid. at 589-606.

법원의 略式裁判의 실무에는 告訴狀(code-pleading)과 같은 형식주의가 부활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도한 입증활동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

셋째, 법정의견은 선례<sup>17)</sup>를 잘못 이해하여 환경상의 손해로 인하여 침해를 받았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 원고는 당해 침해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이용자이어야 하지만, 선례가 특정한 지리적인 근접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고가 자연을 眺望할 권한을 광업으로 인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사안 때문이고, 환경상 다수의 손해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급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고 환경 파괴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동하는 동물에 대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법정의견은 자금을 교부하는 연방행정기관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장관과의 협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滅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제1536조에 근거하는 협의에 관한 규칙이 당해 행정 기관을 구속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공연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행정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다섯째, 법정의견은 당해 행정기관은 자금의 일부를 교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교부가 철회될 우려는 외국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동법에 근거한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種에 대한 침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의 대부분의 행위는 절차적인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복잡한 규제영역에서 연방의회는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단지 실체적인 금지사항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일정한 절차적인 제약사항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

17)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497 U.S. 871, 110 S. Ct. 3177 (1990).

도록 하기 위하여 취소의 방법을 결정하게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법률을 실시하는 절차적 방법을 규정한다고 하여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일곱째, 법정의견은 절차적 침해를 받은 자에게 연방의회가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연방의회가 성질상 집행권으로 보이는 권한을 법원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동열에서 다루고 있지만 본 건은 연방의회가 법률에서 명한 절차를 강조하는 취지임에 불과하고 授權制限法理(nondelegation doctrine)도 연방의회가 고유한 제약의 범위내에서 대등 정부차원에서 원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sup>18)</sup>

이상과 같이 본판결의 법정의견은 시민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제정법상의 市民訴訟規定, 즉 세 가지 심사「事實上의 損害」, 「因果關係」 및 「救濟可能性」과 헌법 제3조의 權力分立原則이라는 論理構造」를 제시하였지만 반대의견 및 학설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法廷意見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18) 이 밖에도 두 가지의 보충의견이 있다. 먼저, Kennedy 판사와 Souter 판사는 원고는 자체적이고 개인적 침해를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 요건은 실체적인 것으로 원고가 소송결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시된 법적 논점이 소송결과에 대하여 현실적 평가에 이바지하게 될 구체적인 사실상의 상황에서 해결이 동시에 확보되면 소송의 대립구조는 존속되기 때문에 본건과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주장의 연쇄이론 유사의 이론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504 U.S. at 579-581). 또한 Stevens 판사는 원고는 소송결과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법원이 난해한 문제점을 해명하기 위한 논점을 설명하게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립관계가 확보되면 충분하고 원고가 減種憂慮種의 보호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고 장래에 이 種의 연구 또는 관찰을 할 의사가 있다면 원고가 받은 침해는 이들의 멸종에 의하여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침해의 급박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연방의회의 의사는 주로 국내사정을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504 U.S. at 581-589).

### III. 聯邦大法院判決의 檢討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사건의 연방대법원판결에서는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서의 논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그들이 상호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市民訴訟에서의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減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과 동법 소정의 市民訴訟에 관한 이해, 權力分立原則에 관한 이해 및 略式裁判(summary judgement)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에 논점을 두고 약간의 검토를 하기로 한다.

판례가 확립한原告適格의 判斷基準은 피고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그 이익이 당해 법률의 보호이익의 영역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의 침해가 있었거나 있을 위험에 당면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고, 후자는 그러한 침해가 법률상 보호이익의 영역 내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sup>19)</sup> 제1단계의 판단은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고, 제2 단계의 판단은 행정절차법에서 우러나온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 1 단계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 사실상의 손해, 인과관계, 구제가능성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sup>20)</sup>

19) 제1단계의 기준을 다시 ① 심사대상이 되는 행위가 원고에게 실제로 사실상 손해를 주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위험이 있는가, ② 그러한 침해가 대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追跡될 수 있는가(traceability), ③ 그 침해가 사법심사를 하면 구제될 수 있는가 (redressibility) 등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Percival et al., Environmental Regulation(2d ed), p. 726 참조).

20) 李翰成, “美國環境法上의市民訴訟制度”, 「行政法研究」(行政法理論實務研究會, 2000), 73면.

### 1. 事實上의 侵害, 因果關係 및 救濟可能性

연방대법원의 법정의견은 原告適格의 判斷基準에 관하여 그 핵심부분은 事實上의 侵害(injury-in-fact), 因果關係(causation) 및 救濟可能性(redressibility)에 있다고 하여 종래 대법원판례<sup>21)</sup>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이 시민소송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2)</sup> 觀念的인 利益 또는 법 실현에 있어서 이익을 가지는데 불과한 자는 행정기관 등에 법이 요구하는 행위의 실행을 청구하는 순수한 시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고 있는데,<sup>23)</sup> 이것은 법정의견이 시민소송과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법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일단 본건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에 적용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법정의견은 사실상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당해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의 구체적 이용자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Sierra Club v. Morton 판결이후 연방대법원이 일관되게 채용해온 기준이다.<sup>24)</sup> 그러나 본건에서 원고가 침해받은 권리가 다수자에게 향수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모든 시민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sup>25)</sup>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 권리침해의 잠재성은 제3자에게는

21) eg. Simon v. Eastern Ky. Welfare Rights Org., 426 U.S. 26, 38, 41-42.

22) Borchardt, Notes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Unwarranted Judicial Interference with Congressional Powe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992 Wis. L. Rev. 1337, 1360-1361. 법정의견은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702條(5 U.S.C. § 702)와 減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 1540 조(g)항의 문헌상 상이에 관해서는 완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23) Sustain, What's Standing After Lujan? of Citizen Suits, "Injuries," and Article III, 91 Mich. L. Rev. 163, 226.

24) 405 U.S. 727(1972).

25) Treister, Standing to Sue the Government : Are Separation of Power Principles Really Being Served?, 67 Southern California L. Rev. 689, 709.

없고 원고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 즉 원고가 당해 지역에 渡航함으로써 직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sup>26)</sup>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반대의견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법정의견은 사실상 침해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가 Stevens 판사의 보충적 견해와 같이 소송에 있어서 논점을 선명하게 제시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대립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sup>27)</sup> 법정의견의 판단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 더욱이 사실상 침해를 심사하는 목적의 하나가 원고적격이 청구서를 평가하는 선중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訴訟入口의 결정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면,<sup>28)</sup>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원고가開始節次(discovery)와 기타 사실인정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침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sup>29)</sup>

둘째, 법정의견은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집행부의 활동에 일정한 절차요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실체적 권리와는 관계없이 개인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의 창설이라는 사고를 배척한다. 그리고 절차적 침해의 주장은 일반화된 불복(generalized grievance)의 주장이며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법정의견이 절차적 권리 및 절차적 침해의 관념을 연방헌법 제3조와 관계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30)</sup> 이것도 Sierra Club v. Morton 판결이래 연방대법원이 채용하여온 해석과 일관된다. 그리하여 법정의견은 헌법 제3조의 요건을 유지한 채 연방의

26) Borchardt, op.cit., 35 at 1365-1366.

27) Flast v. Cohen, 392 U.S. 83, 99-100 (1968).

28) eg.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Service Organization v. Camp, 397 U.S. 150, 152-154 (1970). Sunstein, op.cit., 36 at 203.

29) Treister, op.cit., 12 at 712-713.

30) Borchardt, op.cit., 35 at 1354-1355.

회는 신중한 原告適格의 準則(prudential standing rule)에 의하여 사법 심사로부터 배제되는 자에 대해서도 訴權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한 *Warth v. Seldin* 판결<sup>31)</sup>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본건 항소심판결 이외에도 절차적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sup>32)</sup>가 있는데, 그들은 절차적 침해를 원고적격에 관한 법원의 자체적인 제약사항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대법원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과 관련하여 實體的 侵害와 節次的 侵害와의 결합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sup>33)</sup> 모든 절차적 침해가 사실상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정의견의 절차적 침해에 대한 접근은 형식적인 것이 불과하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법원은 실체적 침해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보다 관대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sup>34)</sup>

셋째, 법정의견은 자금을 교부하는 연방행정기관은 법원과는 독립한 행위자라고 하여 원고가 받은 침해와 소송의 대상과의 因果關係를 부정하였다. 일반적으로는 확실히 법원은 소외 제3자의 행동을 예측 또는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본건에서는 내무장관과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행정기관과 외국정부와의 관계가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연방행정기관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고려할 수 없고 또한 연방행정기관이 교부하는 자금액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여

31) 422 U.S. 490 (1975).

32) 예컨대 *City of Davis v. Coleman*, 521 F. 2d 661 (9th Cir. 1975)에서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建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요구하는 環境影響評價書(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의 제출을懈怠히 한 것은 *City of Davis*에原告適格을 인정함에 있어 절차적 침해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특히 제9순회항소법원은 절차적 침해에 관하여 이해를 가지고 있다(Borchardt, op.cit., 35 at 1351-1354).

33) e.g.,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s Council*, 490 U.S. 322, 350-353 (1989).

34) Borchardt, op.cit., 35 at 1359-1360.

론의 동향 등으로 연방행정기관이 자금교부를 철회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면 외국정부가 당해 사업을 재고할 가능성은 극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의견의 설득력이 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법정의견은 원고의 구제가능성에 관해서도 인과관계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유로 설득력에 흠결이 있는 것도 있다.<sup>35)</sup> 또한 법정의견은 구제가능성은 심사의 교묘한 조작을 허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급심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sup>36)</sup> 예컨대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환경소송에서 구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하여야 하므로 많은 환경소송에서 구제가능성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제가능성은 사실상 침해의 표제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제거된다면 이것을 인정해야하고 그 특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입법부의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sup>37)</sup>

이상의 검토에서 볼 때 법정의견은 특히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해당지역의 이용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滅種危機野生生物保護法의 목적<sup>38)</sup>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5) Sunstein, Standing and Privatization of Public Law, 88 Colum. L. Rev. 1432, 228(1988).

36) Borchardt, op.cit., 35 at 1372.

37) Sunstein, op.cit., 36 at 228-229.

38) 동법 1531조(b)항에서는 「동법은 滅種危機種 및 滅種憂慮種이 종속하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수단과 이들의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a)항에 규정된 조약 및 국제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조(c)항에서는 「(1) 연방의회는 더욱이 연방의 성 및 행정기관이 滅種危機種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하고 본안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명할 것을 정책으로 선언하고 있다. (2) 연방의회는 더욱이 滅種危機種의 보호와 조화를 도모하고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행정기관에 주 및 지방행정기관과의 공조를 명하는 것을 정책으로 선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6 U.S.C. § 1531(b) · (c)).

## 2. Take Care 條項

다음으로 법정의견은 원고적격의 판단에 연방헌법 제2조의 Take Care 조항을 들고 있다. 권리분립원칙과의 관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것은 주로 Scalia 판사의 견해로 그의 헌법관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즉 연방헌법의 권리분립의 중심적 메카니즘은 어떠한 활동이 입법부, 집행부, 법원에 속하는가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sup>39)</sup> 각 정부부문은 고유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엄격히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0)</sup> 그리하여 원고적격의 법리는 법원의 역할이 전통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서 다수자 횡포로부터 개인과 소수자의 보호에 한정되고 다수자 자체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집행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sup>41)</sup> 연방의회가 절차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집행권의 일부를 법원에 위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법정의견은 이에 의하여 연방헌법 제3조의 「사건 및 쟁송」의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일반적 침해와 구체적인 침해의 관념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곤란을 회피함과 동시에 원고적격을 집행권의 범위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진다.<sup>42)</sup>

그러나 Scalia 판사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헌법은 배타적인 집행부의 권한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sup>43)</sup>, 법정의견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를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절차적 침해는

39) 504 U.S. at 559-560.

40) Morrison v. Olsen, 487 U.S. 654, 699(1988)(Scalia, J., dissenting)

41) Scalia, The Doctrine of Standing as an Essential of the Separation of Powers, 17 Suffolk U.L. Rev. 881, 894(1983).

42) The Supreme Court 1991 Term, 106 Harv. L. Rev. 22, 312(1992).

43) 504 U.S. at 559.

법원의 자체적인 제한사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sup>44)</sup> 또한 법정의견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기의 재량판단으로 법률의 집행을 완전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법률을 무시함으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비판이 있다.<sup>45)</sup> 즉 현대에서 권리분립원칙은 분리되고 독립된 각 정부부문이 비판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하고 그 시스템은 동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연방의회가 충분한 사실상의 침해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법원은 자동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sup>46)</sup>

또한 법정의견은 원고가 略式裁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심리하는 단계에서 본안의 단계와 동등한 범위와 정도로 자기가 실현하고 구체적인 침해를 받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 침해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판결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환송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가 적시한 사실의 존재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그것을 법에 적용하기 위한 결과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환경이 일단 파괴되면 회복이 곤란하고 急迫性(imminence)의 요건을 유연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정의견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이것을 원고적격의 문제에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급박성의 개념에 관하여 소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원고적격의 법리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본판결의 내용은 公權모델로부터 私權모델로의 회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법정의견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이익 또는 개인이 받은 사실

44) Brochardt, op.cit., 35 at 1355-1356.

45) The Supreme Court 1991 Term op.cit., 55 at 316; Treister, op.cit., 12 at 691; Sunstein, op.cit., at 1471.

46) Treister, op.cit., 12 at 717-718.

상의 침해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에서 제기하는 소위 客觀的 訴訟은 연방헌법상으로는 법률로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sup>47)</sup> 그러나 법정 의견에서는 본건과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판결만을 가지고 市民訴訟의 原告適格에 관하여 전부를 명백히 하였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 IV. 結 論

Defenders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환경보호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節次的 損害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환경법을 집행하기 위한 시민소송의 규정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가 효과적인 강제적 절차를 이용하여 환경책임을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實體的 侵害에 관한 판결은 멸종위험종의 문제에 관한 특수한 성질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외국에서의 멸종위험종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Defenders 사건은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절차적 침해를 연방대법원이 폭넓게 거부한 것은 정부의 업무가 대부분 절차

47) 다만 모든 객관소송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적·민사소송(qui tam action) 등 영미법의 전통에 친숙한 것도 있다(Caminker, *The Constitutionality of Qui Tam Action*, 99 Yale L.J. 341 (1989)).

48) Sunstein, op.cit., 36 at 229-231. 또한 Kennedy 판사의 보충의견에 의하면 연방의회는 보통법상의 권리와는 관계없이 권리를 창설하고、侵害, 因果關係 및 救濟可能性에 관해서 定義할 수 있음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法律의 修正으로도 原告適格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적 업무임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원고적격을 결정함에 있어 절박하고 지리적 근접심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하급심 법원에게 효력이 없는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보다 유연하게 원고적격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Defenders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했어야 했다. 다수의견이 다른 사실상의 관계에서 전개된 원고적격의 원칙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궁극적으로 의회의 중요한 목적과 모순된다. 시민소송규정은 시민들에게 환경법규의 집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고, 의회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ESA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Defenders 판결은 의회의 관심을 무시하였다. 의회가 헌법상 원고적격의 조건을 제거할 수 없듯이 연방대법원도 최소한 Defenders사건과 같이 결정이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도를 존중해주어야 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은 기존의 원고적격을 문언에 충실히 따르도록 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형식주의는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며,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Defenders사건 이전에는 연방대법원은 점차적으로 Morton, SCRAP 그리고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사건에서의 판결을 통하여 환경상 원고적격의 중심부를 강화하였다. Defenders판결은 이러한 전통적인 추세를 확고하게 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Borchardt, Notes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Unwarranted Judicial Interference with Congressional Powe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992 Wis. L. Rev 1337,1360-1361.
- Boyer & Meidinger, Privating Regulatory Enforcement: A Preliminary Assessment of Citizen Suits under Federal Environmental Laws, 34 Buffalo L. Rev. 833, 844(1985).
- Caminker, The Constitutionality of Qui Tam Action, 99 Yale L.J. 341 (1989).
- Greve, The Private Enforcement of Environment Law, 65 Tulane L. Rev. 339, 340(1990)
- P.J. Quirk, Industry Influence in Federal Regulatory Agencies, 4, 23 (1981).
- Scalia, The Doctrine of Standing as an Essential of the Separation of Powers, 17 Suffolk U.L. Rev. 881, 894(1983).
- Stewart, The Reformation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88 Harv. L. Rev. 1667, 1682-1686 (1975)
- Sunstein, Standing and Privatization of Public Law, 88 Colum. L. Rev. 1432, 1471(1988).
- Sustain, What's Standing After Lujan? of Citizen Suits, "Injuries," and Article III, 91 Mich. L. Rev. 163, 226.

Treister, Standing to Sue the Government : Are Separation of Power Principles Really Being Served?, 67 Southern California L. Rev. 689, 692-701.

孫東源, “美國環境法上의 市民訴訟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李翰成, “美國 環境法上의 市民訴訟制度”, 「行政法研究」(行政法理論實務研究會, 2000).

【ABSTRACT】

#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Kim, Choon Hwan

The law of standing has been described as “baffling tests and elastic concepts that trap potential litigants who seek access to federal courts” and as “one of the most amorphous concepts in the entire domain of public law.” In contrast, the claim in *Defenders* was brought under the Endangered Species Act’s citizen suit provision and involved an injury to individual members’ interests in studying endangered species abroad. In doing so, the Court categorically rejected the plaintiffs’ procedural injury as a basis for standing,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the requisite showing for a substantive injury more difficult. The *Defenders* holdings on procedural injury, substantive injury and redressability present several serious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law.

Part II of this Note briefly reviews some factual background and lower court, the Supreme Court of *Defenders* decision. Part III analyzes the underlying logic and the troublesome implications of the *Defenders* decision. Finally, Part IV arranges the main points of The Supreme Court of *Defenders* decision.